

항공교통관제교육원 정규과정 운영세칙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04.8.16		16		
2	2012.8.24		17		
3	2013.12.5		18		
4	2015.7.1		19		
5	2016.10.28		20		
6	2018.6.15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항공교통관제교육원 정규과정 운영세칙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본 운영세칙은 항공교통관제교육원(이하 ‘관제교육원’ 이라 한다)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 중 정규과정(이하 ‘정규과정’ 이라한다.)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07.01.>

제2장 학사운영

제2조 (입과) 정규과정 입과 대상자는 본 관제교육원 규정 제1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본 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교통과정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항공교통전공자 (또는 예정자)로서 해당하는 일부 과목을 이수하여 본 정규과정 수료 시까지 모든 학과목 이수가 가능한 자.<개정 2018.6.15>
2. 본 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교통전공으로 편입한 자로서 정규과정의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고 수료 시까지 모든 학과목 이수가 가능한 자.

<개정 2012.8.24. 2018.6.15>

제3조 (선발) ① 본 과정에 입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과 서류를 제출한다.

1. 본 교육원 소정의 입과 원서 1부
2.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3.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제3종 사본 1부
4. 공인기관에서 2년 이내에 발행한 영어 성적표 사본 1부
5. 기타 본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서류

② 입과 심사는 입과 전 전체 학년의 성적(50%)과 영어성적(50%)을 합산하여 성석 순에 의거 선발한다.

③ <삭제 2012.08.24.>

④ 심사에 합격한 자는 총장의 재가를 통하여 입과를 허가한다.

⑤ 원장은 필요시 관련학과목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입과 심사에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.<신설 2018.6.15>

제4조 (입과인원) 본 과정의 입과 인원은 최대 50명으로 한다. 단,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[별표12] 8. 항공교통관제사과정 지정기준의 교관 대 피교육생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07.01., 2018.6.15>

제5조 (학과목 및 실기교육 편성) ① 과정의 총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제4조의 입과 인원 내에서 매년 2차에 걸쳐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18.6.15>

② 학과교육 편성 및 실기교육 편성은 <별표1> 및 <별표2>에 의한다.

- ③ 학과교육은 본 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교통전공 교과과정에 준하며 이수에 따른 추가 학과목이 필요할 경우 원장은 학과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.
<개정 2018.6.15>

제6조 (현장실습) 관할청 산하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15.07.01.>

제7조 (학점인정) ① 본 관제교육원 입과 이전 항공교통물류학부에서 필수 학과목 및 실기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 그 학점 및 실기시간을 인정한다.<개정 2018.6.15>

- ② 관할청으로부터 항공교통관제 지정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본 관제교육원으로 편입할 경우 그 실습시간 및 학점을 인정한다. 단, 본 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교통전공으로 편입한 자이어야 하며 제적에 의한 편입은 제외하고, 학점 인정은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<개정 2015.07.01. 2018.6.15>

- ③ 제10조에 의거 일정 기간 휴학 후 복학한 경우 휴학 전 이수한 학과목의 학점 및 실기 시간을 인정한다.<개정 2018.6.15>

제8조 (교육평가) ①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에 대한 평가 방식은 본 대학교 학칙 제6장 제31조의 방식에 의거 평가하며 수료를 위한 성적은 각 과목당 70점(C°) 이상이어야 한다.<개정 2015.07.01.>

- ② 학과목 평가는 각 교과일람의 과목별로 평가하고 각 과목의 학과 교육이 종료되면 최종평가를 실시하며, 불합격 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수강을 실시한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.

- ③ 실기교육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
1. 실기교육평가는 총 3회 실시하며, 불합격 된 자는 추가교육 각 1회씩을 실시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.
2. 실습시간이 부족한 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실습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나, 원장이 일정기간 내의 충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수로 처리한다.
3. 실기교육 평가는 비행장관제<별표3>, 접근관제<별표4>, 항로관제<별표5>, ()비행장관제<별표6>의 평가서의 양식에 따라 시행한다.<개정 2015.07.01.>

제9조 (최대결석허용시간) ① 본 정규과정 학과교육의 최대 결석 허용 시간은 본 대학교 학칙 제6장 제30조 제①항에 의거 과목별 총 수업시간 수의 1/4 이상 결석할 수 없다.

- ② 실기교육의 최대 결석 허용시간은 각 해당 과목의 교육시간의 15% 이하여야 한다.

- ③ 실기교육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.

제10조 (휴학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다.

1. <삭제 2018.6.15>

2. 교육과정 이수 중 질병, 사고 등에 의하여 해당과목 교육시간의 15%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한자

제11조 (제적) 본 과정의 학생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적 처리한다.

1. 휴학기간 만료 후 7일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
2.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3. 본교에서 제적 또는 퇴학 처리된 자

4. 징계에 의하여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수업일수의 15% 이상의 결석 처리된 자
5. 장기간 무계출 결석한 자
6. 학과교육은 1회의 재수강, 실기교육은 1회의 재시험에도 불합격한 자
7. 사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기준 제3종에 불합격한 자.

제12조 (유급) 본 과정 수료일까지 학과목 이수 또는 실습시간이 충족되지 않은 자는 유급으로 하며 제8조(교육평가)에 의거 재수강 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3조 (학사진행) ① 학과 및 실기교육훈련은 사전에 작성된 교수요목표에 의거 진행하며, 결강 시에는 보강계획에 의거 보강을 실시한다.

② 교육훈련의 진행사항과 개인별 출·결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목별 출석부를 작성하여 시행한다.

③ 교육 종료 시 학과 및 실기교육 결과 보고 시 과목별 출·결석 사항을 한다.

제14조 (학사보고) 본 과정을 진행하면서 관할청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07.01.>

1. 입과보고 : 본 과정에 입과한 자의 명단 및 교육기간을 보고한다.
2. 수료보고 : 본 과정에 이수한 자의 명단 및 평가결과를 보고한다.
 - 가. <삭제 2012.8.24>
 - 나. <삭제 2012.8.24>
 - 다. <삭제 2012.8.24>

제15조 (이수증명서 발급) ① 본 관제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한다.

② 교육이수증명서는 <별표7>과 같다.

제16조 (기록 및 보관) ① 본 관제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입과한 자의 인적사항, 교육훈련 내용, 교육평가 및 특기사항을 개인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.

② 학생의 교육평가 및 신분상의 제증명은 개인기록부의 기재사항에 의한다.

③ 개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1의 사항을 기록·유지한다.

1. 교육과정명
2. 학생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생년월일) 및 현주소
3. 학생의 출석여부기록
4. 교육훈련 이수과목 및 내용
5. 각 실습 시간
6. 교육평가
7. 교육취득사항
8. 기타

④ 제 ③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학생의 기록을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간 보관한다. 단, 요약본은 준영구 보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세칙 이외의 사항은 요령에 따른다.
3. 이 개정세칙은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세칙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5. (경과조치) 2012년도 입과자부터 이 변경 운영규정을 적용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8.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10월28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9. ①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세칙 시행 이전에 입과한 자도 이 세칙을 적용한다.

<별표1> <개정 2016.10.28. 개정 2018.6.15>

학 과 교 과 과 정 표

항공안전법 기준		교 육 계 획		수강학기 (학년/학기)	비 고
과 목	시간	과 목	시간		
항공관제영어	70	항공영어	45	3/2	
		항공교통관리	25	2/2	
항공법규	5	항공법규	항공법규	5	2/2
항공규칙	30		항공규칙	30	
출입국절차	5		출입국절차	5	
항공보안	2		항공보안	5	
항공교통업무	60	항공교통개론	45	2/1	
		항공교통관리	20	2/2	
항공정보업무	8	항공정보 (총45시간)	항공정보업무	10	2/2
수색 및 구조	25		수색 및 구조	25	
비행장	10		비행장	10	
항공통신	40	항공통신	45	3/1	
공중항법	25	항행안전시설 및 공중항법	공중항법	40	3/1
항공기	5		항공기	5	
항공기상	20	항공기상학	45	2/2	
		기상통보 및 일기도 해설	45	3/1	
항공기운항	10	운항관리	45	3/2	
인적성능 및 한계	23	항공인적요인 및 항공의학	23		
시험	7	과목별 중간,기말고사 각1회			
		<삭제 2018.6.1.>			
계	345		473		

<별표2> <개정 2018.6.15>

항공교통관제 실습 과정표

1. 실기교육은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[별표12] 8. 항공교통관제사과정 지정 기준에 의거 모의관제장비 교육계획을 180시간으로 한다.
2. <삭제 2015.7.1.>
3. 관제연습은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인준 등급에 따라 일정 시간을 모의관제장비로 실시할 수 있다.

구 분		계획시간	비 고
모의관제	비행장 관제	100	
	레이다 관제	76	접근 및 항공로
관제연습	비행장	90	항공교통관제기관 및 모의관제장비
시 험		4	
계		270	

<별표3> <개정 2018.6.15>

비행장 관제 실기 평가서

○ 과정 명 :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
 ○ 학 번 : ○ 성 명 :
 ○ 총 점 : ○ 등 급 :
 ○ 시험 일자 : ○ 평가자성명 : (인)

채 점 표

번호	항 목	점 수
1	비행장교통구역 및 관제권의 이해	
2	비행허가 요구 및 발부	
3	활주로 선정(Runway Selection)	
4	항공기 지상유도 허가발부 및 우선순위 적용	
5	항공기 이·착륙 허가발부 및 우선순위 적용	
6	이·착륙 항공기간 표준분리유지	
7	실패접근 지시 발부 및 관제	
8	특별 시계비행 항공기의 관제	
9	관할 구역내 항공교통상황 파악	
10	교통정보 제공 (Traffic Information)	
11	기상정보 제공 (저고도 Wind Shear조언)	
12	고도계 수정치(Altimeter Settings)	
13	활주로 가시거리/활주로 시정치 제공(RVR/RVV)	
14	시각 신호(빛총 신호, 경고 신호 및 수신만 가능한 항공기 인지)	
15	공항지표 탐색절차	
16	숫자 사용법(Numbers Usage)	
17	ATIS 운용 절차	
18	출·도착 절차 및 분리기준	
19	발음의 정확성·속도 및 무선송화의 청취·이해(영어)	
20	표준 관제용어 사용	

<별표4> <개정 2018.6.15>

접근 관제 실기 평가서

o 과정 명 :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

o 학 변 :

o 성 명 :

o 총 점 :

o 등 급 :

o 시험 일자 :

o 평가자성명 : (인)

채 점 표

번호	항 목	점 수
1	레이더 시스템 원리 및 운용절차	
2	레이더 식별 방법(Radar Identification)	
3	항공기간 표준분리 유지	
4	표준계기 출발 및 도착 절차 차트의 이해	
5	레이더 유도(Vector) 기법 및 항공기 속도 조절	
6	출발항공기 관제절차	
7	도착항공기 관제절차 및 접근순서 설정	
8	항공기 체공절차	
9	관할 구역내 항공교통상황 파악	
10	각종 항공기 성능에 따른 적절한 관제	
11	위치 보고 및 교통정보 제공	
12	비상, 통신두절 및 피납 항공기 모의관제	
13	관제권 이양 및 Point-out 절차	
14	발음의 정확성·속도 및 무선송화의 청취·이해(영어)	
15	표준 관제용어 사용	
16	레이더 고장시의 관제 및 비레이더 관제절차	
17	자이로 고장시의 접근관제	
18	고도 확인(Altitude Confirmation)	
19	ARTS(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) 의 이해	
20	레이다 업무 종료(Radar Service Termination)	

<별표5> <개정 2018.6.15>

항 공 로 관 제 실 기 평 가 서

○ 과 정 명 :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

○ 학 번 : ○ 성 명 :

○ 총 점 : ○ 등 급 :

○ 시험 일자 : ○ 평가자성명 : (인)

채 점 표

번호	항 목	점 수
1	비행정보구역(FIR) 개념	
2	항로 및 고도배정 절차 및 strip 작성	
3	항공기간 표준분리 유지	
4	입·출항 항공기 관제절차	
5	레이더 유도(Vector) 기법	
6	항공기 속도조절	
7	관할 관제구역내 항공교통상황 파악	
8	항공기 성능에 따른 적절한 관제	
9	제공구역 선정 및 제공지시	
10	고도 배정 및 확인 절차	
11	관제권 이양절차	
12	피납, 비상, 통신두절, 특수항공기 모의관제	
13	발음의 정확성·속도 및 무선송화의 청취·이해(영어)	
14	표준 관제용어 사용	
15	레이더 고장시의 관제 및 비레이더 관제절차	
16	종적,횡적,수직 분리적용	
17	연료 투하(Fuel Dumping) 및 외부 장착물 투하	
18	도착지연 항공기(Overdue Aircraft) 처리 절차	
19	비행계획서 및 관제정보(Flight and Control Information)	
20	항공정보간행물(AIP)의 이해	

<별표6> <개정 2015.07.01. 2018.6.15>

() 비 행 장 관 제 실 무 평 가 서

- 과 정 명 :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
- 학 번 : ○ 성 명 :
- 총 점 : ○ 등 급 :
- 시험 일자 : ○ 평가자성명 : (인)

채 점 표

번호	항 목	점 수
1	비행장 제원 및 시설 파악	
2	활주로 선정(Runway Selection)	
3	활주로상의 차량, 장비 또는 인원의 확인	
4	항공기 지상유도 허가발부 및 우선순위 적용	
5	항공기 이·착륙 허가발부 및 우선순위 적용	
6	이·착륙 항공기간 표준분리유지	
7	실패접근 지시 발부 및 관제	
8	장주 내 항공기 및 입항 항공기간의 분리	
9	장주 내 항공교통상황 파악	
10	항공교통정보 제공 (시각신호)	
11	기상정보 제공	
12	발음의 정확성·속도 및 무선송화의 청취·이해(영어)	
13	표준 관제용어 사용	
14	비상항공기 모의관제 (모의 엔진 정지비행)	
15	공항지표 탐색절	
16	고도계 수정치(Altimeter Settings)	
17	공항등 운용(Airport Lighting)	
18	활주로 가시거리/활주로 시정치 제공(RVR/RVV)	
19	시각 신호(빛총 신호, 경고 신호 및 수신만 가능한 항공기 인지)	
20	ATIS 운용 절차	

<별표7> <개정 2018.6.15>

번호 : 제 호

이 수 증 명 서

성 명 (한글) : 주민등록번호 :
(영문) :
주 소 :

위 사람은 항공안전법 제4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「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·지침 및 전문교육 기관 지정요령」에 의한 항공종사자 항공교통관제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교 육 기 간 -학과교육: ~
-실기교육: ~

20 . . .

한국항공대학교 부속
항공교통관제교육원장 000